

## ●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-98호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「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07월 22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###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시행규칙이 개정(2025년 8. 7. 시행)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기한 정비
- 나. 수정·보완 요청 절차(횟수·기간) 보완
- 다. 부적합 검토 결과 후 제출 절차 제정
- 라.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제출 대상 제정
- 마. 변경 제출 절차(시기·저감 목표 주기) 등 제정
- 바. 목표 달성 사업장에 대한 인정 기준 제정

#### 3. 의견제출

이 제정 고시안(붙임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25년 8월 1일까지**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(참조 : 사고예방심사1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제정(안) 전문은 ‘화학물질안전원’ 홈페이지 알림마당>법령정보>안전원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필요사항(참고자료)

라. 보내실 곳 :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

○ 주소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

○ 메일 : jami101@korea.kr

○ 전화 : 043-830-4231, FAX : 043-830-4299

※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(<http://nics.me.go.kr>)